

##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자회사등이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해 영 제27조제4항 각 호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%p 내에서 초과하는 경우. 다만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은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)</p> <p>영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"금융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"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1. ~ 8. (생략) &lt;신설&gt;</p>	<p>제15조(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)</p> <p>----- ----- ----- ----.</p> <p>1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자회사등이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해 영 제27조제4항 각 호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%p 내에서 초과하는 경우.</u> 다만 <u>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은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</u>로 한다.</p>